

# 『미래행복통장』 특약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9년 1월 14일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3. 개정 내용 : 통일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약관 변경, 가입기간 확대, 수수료 우대서비스 적용 통장 확대, 용어수정 등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b>미래행복통장 특약</b>	<b>『미래행복통장』 특약</b>	
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『미래행복통장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적립식 예금 약관』,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(이하 "정착지원법"이라 함), 동법 시행령, 통일부 고시 <u>미래행복통장 세부운영 지침</u>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	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『미래행복통장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적립식 예금 약관』,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(이하 "북한이탈주민"이라 함), 동법 시행령, 통일부 고시 <u>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(미래행복통장) 운영지침</u> (이하 "운영지침" 이라함)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	관련법령 약 칭 수정, 문 구 정비
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 ①이 예금은 통일부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<u>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이하 "기관"이라 함)</u> 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승인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KEB하나은행 관리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함)으로 등록된 실명의 개인(이하 "고객"이라 함)과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.  ②(생략).	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 ①이 예금은 통일부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이하 "기관"이라 함)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승인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KEB하나은행 관리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함)으로 등록된 실명의 개인(이하 "고객"이라 함)과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.  ②(좌동).	관련법령  개정에 따라  북한이탈주 민정착지원 사무소 문구 삭제,  예금 종류로 용어정정
<b>제 3 조 예금종류</b> 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<u>상호부금</u> 으로 합니다.	<b>제 3 조 예금종류</b> 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<u>적립식예금</u> 으로 합니다.	예금 종류로 용어정정
<b>제 4 조 가입기간</b> 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<u>고객은 48개월, 기관은 54개월</u> 로 합니다. 단, 고객의 적립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적립금(이하 "미래행복지원금"이라 함)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고객이 별도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미	<b>제 4 조 가입기간</b> 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<u>고객은 72개월, 기관은 78개월</u> 로 합니다. (단,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. <u>고객의 적립에 따라 기관</u>	가입기간 확대

<p>래행복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 5 조 ~ 제 10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 11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</p> <p>①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일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, 은행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<u>매월 총 10회씩</u> 면제합니다. 단,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<u>매월 총 10회씩</u>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전자금융(자동화기기, 폰뱅킹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) 타행 이체거래</li> <li>2.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</li> <li>3.통장 재발행 수수료</li> </ol> <p>②제 ①항에도 불구하고, <u>‘늘~ 하나 급여통장’ 또는 ‘하나 행복 Knowhow 통장’을 이용해 급여 이체 시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.</u></p> <p><b>제 12 조</b> (생략)</p>	<p>으로부터 지원되는 적립금(이하 “미래행복지원금”이라 함)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거주지 보호기간내에서 고객이 별도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미래행복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)</p> <p><b>제 5 조 ~ 제 10조</b> (좌동)</p> <p><b>제 11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</p> <p>①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일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, 은행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<u>총합 월10회</u> 면제합니다. 단,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<u>총합 월 10회</u>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전자금융(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, 폰뱅킹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) 타행 이체거래</li> <li>2.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</li> <li>3.통장 재발행 수수료</li> </ol> <p>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입출금통장에 <u>급여 이체된 경우<sup>(주1)</sup>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.</u></p> <p>- <u>‘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’, ‘행복 Knowhow 주거래우대통장’, ‘급여하나통장’, ‘주거래하나통장’, ‘연금하나통장’</u></p> <p>(주1) 급여이체 인정기준 :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되거나,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(급여성 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 등)</p> <p><b>제 12 조</b></p>	<p>서비스기준 명확화, 용어 변경</p> <p>통장명칭 변경건 수정 표시및 적용 통장 확대, 급여이체 인정기준 설명 추가</p> <p>금융감독원 약관변경</p>
--	--	--

<p><b>제 13조 기타</b></p> <p>①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. <u>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.</u></p> <p>②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고시한 <u>미래행복통장 세부운영 지침에</u> 따릅니다.</p>	<p>(좌동)</p> <p><b>제 13조 기타</b></p> <p>①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. <u>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하며,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고시한 <u>‘운영지침’</u> 에 따릅니다.</p>	<p>권고안 내용반영.</p> <p>1조 문구정비 적용한 문구 수정</p>
---	--	---